

의안번호	2203060
의 퇴 인	한민수의원
회 답 일	2024. 10. 8.
추 계 번호	24B3050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지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2억 1,500만원, 2030년 13억 7,2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64억 7,0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 본 추계는 종량제 물품 등 무상지급 실적이 없는 47개 지방자치단체 및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로 한정하여 추계한 것으로, 향후 지급대상자 확대 등에 따라 전체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안 제14조제9항 신설) - 취약계층에 대한 쓰레기 종량제 봉투 등 무상제공	1,215	1,255	1,294	1,334	1,372	6,470	1,294

- 주: 1. 지급대상은 2022년 기준 쓰레기 종량제 봉투 무상지급 실적이 없는 기초지방자치단체 47개소의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로 한정
2. 가구원수별로 1인가구에 월 60L(=20리터×3매), 2인이상가구에 월 120L(=20리터×6매) 무상제공 하는 것으로 가정
3. 동 추가재정소요는 전액 지방비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 보건복지부 복지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구분별 가구원수별 수급가구수 통계 및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2020~2050년」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4조제9항 신설(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u>종량제 봉투</u>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u>무상</u>으로 제공할 수 있음(제9항)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4.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14조제9항 신설(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	- 일부추계 - 현재 쓰레기 종량제 물품 무상 지급 실적이 없는 47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한정하여 추계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환경부의 「2022년 쓰레기 종량제 세부현황」 통계에 따르면 전국 229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182개 지자체가 저소득층 가구에 무상으로 쓰레기 종량제 물품 지급중
 - (무상 지급 물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영세민 등에게 무상으로 지급된 물품(봉투, 납부필증(스티커, 칩) 등)
 - － 무상지급 대상자는 각 지자체별로 정한 조례에 따라 상이함
 - ※ [참고자료 1] 쓰레기 종량제 물품 무상지급 기초지방자치단체 현황, [참고자료 3] 지방자치단체별 종량제 쓰레기 봉투 무상 지급 대상 사례 참고
 - 종량제 물품의 무상 지급 실적이 없는 기초지방자치단체는 47개소
- 개정안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취약계층에 대하여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 개정안에 따른 종량제 봉투 무상 지급 대상 취약계층은 다음과 같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다만, 각 취약계층 집단 간 중복가구를 추려내는 데 한계가 있음
 - ※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가구-한부모가족가구, 기초생활수급자가구-장애인가족포함가구, 기초생활수급자가구-기초연금수급자가구 등 집단간 중복되는 가구가 존재하나 통계자료의 한계로 중복가구를 제거하는 데 한계가 있음
- 현재 종량제 봉투 무상지급 실적이 있는 182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개정안에 따른 취약계층의 범위 지정에 따라 지급대상 가구가 확대될 수 있으나, 추가 지급 대상 가구 수를 특정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따라서 본 추계는 종량제 물품 등 무상지급 실적이 없는 47개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 내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대해 월 일정 수량의 종량제 봉투를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

- (종량제 봉투 무상지급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로 한정
- (월별 지급 매수)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¹⁾에 따라 가구원수별로 다음과 같이 구분
 - (1인가구) 월 60L(=20리터×3매)
 - (2인이상가구) 월 120L(=20리터×6매)
- (종량제봉투 단가) 환경부의 「2022년 쓰레기 종량제 세부현황」의 ‘2-라. 공공용 봉투·무상지급 물품 제작 및 사용 현황’ 통계 중 ‘무상지급물품’ 제작비용 및 제작수량 자료 참고

1)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2022.1.

III. 세부 시행지침

1. 종량제봉투에 관한 사항

아. 저소득층 등의 수수료 경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모·부자 가정 등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저소득 자에 대하여 가구당 매월 120L를 기준으로 일반용 봉투를 무료로 공급**하거나 봉투값을 경감하여 매월 생활보호비(물품)와 함께 제공하되, 중복지급은 제외하며 선심성 무상제공사례 억제
 - 다만,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월 60L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 이때, 추계기간 동안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적용²⁾
-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쓰레기 종량제 봉투 무상지급 현황

- 환경부의 「2022년 쓰레기 종량제 세부현황」 통계에 따르면 전국 229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182개 지자체가 저소득층 가구에 무상으로 쓰레기 종량제 물품 지급중
 - 47개소는 무상지급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 무상지급 실적이 있는 182개 지자체 목록은 [참고자료 1] 쓰레기 종량제 물품 무상지급 기초지방자치단체 현황 참고

[표 2] 종량제 봉투 등의 무상제공 기초지방자치단체 현황

(단위: 개소)

구분	시·군·구 수	무상제공 여부		
		무상제공	미제공	
전국 합계	229	182	47	
서울특별시	25	22	3	중랑구, 송파구, 강남구
부산광역시	16	16	—	—
대구광역시	9	8	1	군위군 ¹⁾
인천광역시	10	1	9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광주광역시	5	4	1	동구

2)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

(2024년 3월 기준, 단위: %)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소비자물가상승률	2.6	2.2	2.2	2.1	2.1	2.1	2.0

구분	시·군·구 수	무상제공 여부		
		무상제공	미제공	
대전광역시	5	5	—	—
울산광역시	5	3	2	중구, 북구
세종특별자치시	1	1	—	—
경기도	31	30	1	과천시
강원특별자치도	18	15	3	홍천군, 화천군, 고성군
충청북도	11	6	5	제천시, 영동군, 증평군, 괴산군, 단양군
충청남도	15	12	3	보령시, 청양군, 태안군
전북특별자치도	14	11	3	정읍시, 완주군, 진안군
전라남도	22	14	8	목포시, 곡성군, 장흥군, 영암군, 함평군, 영광군, 완도군, 진도군
경상북도	22	15	7	구미시, 청송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울릉군
경상남도	18	17	1	산청군
제주특별자치도	2	2	—	—

주: 1) 군위군은 통계 작성 당시 경상북도 관할이었으나, 2023년 7월 1일부로 대구광역시로 편입됨에 따라 대구광역시로 산입함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자원순환마루 > 환경통계정보 > 환경통계현황 > 보고통계(8종) > 쓰레기 종량제 현황 > 2022년 쓰레기종량제현황 <www.recycling-info.or.kr>

- 본 추계는 종량제 물품 등 무상지급 실적이 없는 47개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 내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대해 월 일정 수량의 종량제 봉투를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

나.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취약계층에 대한 쓰레기 종량제 봉투 등 무상제공 (안 제14조제9항 신설)

(1) 종량제 봉투 무상지급 대상

- 최근 3년간 종량제 봉투 지급실적이 없는 47개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이하 “지급대상 가구”라 함)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일반수급자 가구 기준(시설수급자 제외)

[표 3] 종량제 봉투 지급실적이 없는 지자체의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현황: 2022~2024.8월
(단위: 가구)

	가구원수	2022	2023	2024. 8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종량제 봉투 미지급 지자체)	1인가구	169,822	180,896	189,768
	2인가구	39,957	41,307	42,515
	3인가구	16,042	16,080	16,325
	4인가구	7,705	7,602	7,688
	5인가구	2,912	2,855	2,944
	6인가구	754	766	776
	7인이상가구	297	282	287
	합계	237,489	249,788	260,303

주: 1. 일반수급자 기준(시설수급자 제외)
 2. 각 연도 12월 기준. 단, 2024년은 8월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복지포 > 지원 > 복지소식 > 복지통계 > 복지서비스별 > 기초생활보장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구분별 가구원수별 수급가구수 <<https://www.bokjiro.go.kr>>

- 최근 3년(2022~2024년) 간 지급대상 가구와 우리나라 전체 가구 대비 연
 평균 비율은 1인가구 2.45%, 2인이상가구 0.48% 수준
 - 추계기간 동안 동 비율은 변동하지 않고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표 4] 우리나라 총가구수(1인가구, 2인이상가구) 대비 지급대상 가구수 비율: 2022~2024
(단위: 가구, %)

구분	가구원수별 가구	2022	2023	2024	연평균
우리나라 전체 가구	총 가구	21,579,415	21,833,527	22,080,462	21,831,135
	- 전체 1인가구(A)	7,176,225	7,341,206	7,501,431	7,339,621
	- 전체 2인이상가구(B)	14,403,190	14,492,321	14,579,031	14,491,514
지급대상 가구 (47개 지자체)	총 가구	237,489	249,788	260,303	249,193
	- 1인가구(C)	169,822	180,896	189,768	180,162
	(전체 1인가구 대비 비율, C/A)	2.37%	2.46%	2.53%	2.45%
	- 2인이상가구(D)	67,667	68,892	70,535	69,031
	(전체 2인이상가구 대비 비율, D/B)	0.47%	0.48%	0.48%	0.48%

주: 일반수급자 기준(시설수급자 제외)
 자료: 보건복지부 복지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구분별 가구원수별 수급가구수 통계 및 통계청 「장래가구추
 계: 2020~2050년」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2020~2050년」의 1인가구 및 2인이상가구 수에 지급대상 1인가구 비율(2.45%) 및 2인이상가구 비율(0.48%)을 각각 곱하여, 추계기간 동안 지급대상 가구수 산출

[표 5] 지급대상 가구수 전망: 2026~2030년

(단위: 가구)

		2026	2027	2028	2029	2030
우리나라 전체 가구	총 가구	22,516,347	22,705,521	22,879,575	23,037,240	23,180,129
	- 1인가구(A)	7,788,636	7,916,566	8,038,194	8,150,080	8,255,041
	- 2인이상가구(B)	14,727,711	14,788,955	14,841,381	14,887,160	14,925,088
가구원수별 비율	- 1인가구(C)	2.45%	2.45%	2.45%	2.45%	2.45%
	- 2인이상가구(D)	0.48%	0.48%	0.48%	0.48%	0.48%
지급대상 가구	- 1인가구(E=A×C)	191,184	194,324	197,310	200,056	202,632
	- 2인이상가구 (F=B×D)	70,156	70,448	70,698	70,916	71,097
	합계(G=E+F)	261,340	264,772	268,007	270,972	273,729

주: 일반수급자 기준(시설수급자 제외)

자료: 보건복지부 복지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구분별 가구원수별 수급가구수 통계 및 통계청 「장래가구 추계: 2020~2050년」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가구당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급 매수 및 제작 단가

- 가구당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급 매수 및 제작 단가는 다음과 같음

- (월별 지급 매수)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가구원 수에 따라 20L 규격 봉투를 매월 다음과 같이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
 - (1인가구) 월 60L(=20리터×3매)
 - (2인이상가구) 월 120L(=20리터×6매)
- (종량제봉투 단가) 2022년 기준, 20L 기준 제작 단가는 1매당 91.7원
 - 「2022년 쓰레기 종량제 세부현황」의 ‘2-라. 공공용 봉투·무상지급 물품 제작 및 사용 현황’ 통계 중 ‘무상지급물품’ 제작비용 및 제작수량 자료³⁾
 - 이때, 추계기간 동안 종량제 봉투 제작 단가에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

3) [참고자료 2] 2022년도 종량제봉투 등의 무상지급 물품 제작 현황

[표 6] 규격별 종량제 봉투 제작 현황: 2022년 기준

무상지급물품	1L	2L	3L	5L	10L	20L	30L	50L	75L	100L
제작수량 (A, 천매)	1,486	7,781	5,806	4,718	33,442	25,034	275	1,409	6	9
제작비용 (B, 백만원)	41	290	164	331	1,774	2,296	108	662	0	3
제작비 단가 (C=B/A, 원/매)	27.6	37.3	28.2	70.2	53.0	91.7	392.7	469.8	0.0	333.3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2022년 쓰레기 종량제 세부현황」의 '2-라. 공공용 봉투·무상지급 물품 제작 및 사용 현황' 통계 중 '무상지급물품' 제작비용 및 제작수량 자료
(자원순환마루 > 환경통계정보 > 환경통계현황 > 보고통계(8종) > 쓰레기 종량제 현황 > 2022년 쓰레기종량제현황 <www.recycling-info.or.kr>)

(3) 추계 결과

- (일부추계) 추계 결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지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64억 7,0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 본 추계는 종량제 물품 등 무상지급 실적이 없는 47개 지방자치단체 및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로 한정하여 추계한 것으로, 향후 지급대상자 확대 등에 따라 전체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표 7] 쓰레기 종량제 봉투 무상지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가구원수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지급대상 가구 수 (A, 가구)	1인가구	191,184	194,324	197,310	200,056	202,632	—
	2인이상가구	70,156	70,448	70,698	70,916	71,097	—
종량제 봉투 제작단가(20L 기준) (B, 원/매)		101.8	104.0	106.1	108.4	110.5	—
월 지급매수 (C, 매/가구·월)	1인가구 (월 60L)	3	3	3	3	3	—
	2인이상가구 (월 120L)	6	6	6	6	6	—
연간 지급개월 수 (D, 월)		12	12	12	12	12	—
제작비용 (E=A×B×C×D, 백만원)	1인가구	701	727	754	781	806	3,769
	2인이상가구	514	527	540	553	566	2,701
	합계	1,215	1,255	1,294	1,334	1,372	6,470

주: 1. 지급대상은 2022년 기준 쓰레기 종량제 봉투 무상지급 실적이 없는 기초지방자치단체 47개소의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로 한정
 2. 가구원수별로 1인가구에 월 60L(=20리터×3매), 2인이상가구에 월 120L(=20리터×6매) 무상제공 하는 것으로 가정
 3. 동 추가재정소요는 전액 지방비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 보건복지부 복지로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분별 가구원수별 수급가구수 통계 및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2020~2050년」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종량제 물품 등 무상지급 실적이 없는 47개 지방자치단체 및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로 한정하여 추계한 것으로, 향후 지급대상자 확대 등에 따라 전체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이주호	배아형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주호	02-6788-3746	progress@assembly.go.kr

[참고자료 1] 쓰레기 종량제 물품 무상지급 기초지방자치단체 현황

(환경부 제출자료)

구분	시·군·구 수	무상제공 기초지자체 수
계	229	182
서울특별시	25	22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동구)
부산광역시	16	16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대구광역시	9	8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인천광역시	10	1 (중구)
광주광역시	5	4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대전광역시	5	5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울산광역시	5	3 (남구, 동구, 울주군)
세종특별자치시	1	1 (세종시)
경기도	31	30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화성시, 평택시, 의정부시, 시흥시, 파주시, 김포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오산시, 이천시, 양주시, 안성시, 구리시, 포천시, 의왕시, 하남시, 여주시, 양평군,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
강원특별자치도	18	15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양구군, 인제군, 양양군)
충청북도	11	6 (청주시, 충주시, 보은군, 옥천군, 진천군, 음성군)
충청남도	15	12 (천안시, 공주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홍성군, 예산군)
전북특별자치도	14	11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남원시, 김제시,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전라남도	22	14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구분	시·군·구 수	무상제공 기초지자체 수
		화순군, 강진군, 해남군, 무안군, 장성군, 신안군)
경상북도	22	15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경산시, 의성군, 영양군, 칠곡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경상남도	18	17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제주특별자치도	2	2 (제주시, 서귀포시)
	229	182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

자원순환마루 > 환경통계정보 > 환경통계현황 > 보고통계(8종) > 쓰레기 종량제 현황 > 2022년 쓰레기종량제현황 <www.recycling-info.or.kr>

[참고자료 2] 2022년도 종량제봉투 등의 무상지급 물품 제작 현황

(환경부 제출자료)

봉투 규격 시·도별	5L		10L		20L		30L		50L		75L		100L	
	제작		제작		제작		제작		제작		제작		제작	
	수량 (천매)	금액 (백만원)	수량 (천매)	금액 (백만원)	수량 (천매)	금액 (백만원)	수량 (천매)	금액 (백만원)	수량 (천매)	금액 (백만원)	수량 (천매)	금액 (백만원)	수량 (천매)	금액 (백만원)
합계	4,718	331	33,442	1,774	25,034	2,296	275	108	1,409	662	6	-	9	3
서울특별시	341	40	9,393	490	675	93	1	-	-	122	-	-	-	-
부산광역시	706	19	3,642	253	95	64	10	2	-	-	-	-	-	-
대구광역시	1,245	32	3,708	136	1,437	79	7	-	3	26	-	-	-	-
인천광역시	21	3	-	-	139	86	-	-	-	-	-	-	-	-
광주광역시	-	-	1,020	41	892	51	26	4	2	4	-	-	1	1
대전광역시	3	-	2,633	98	1,343	76	-	-	4	1	3	-	-	-
울산광역시	311	114	426	18	139	76	-	-	-	-	-	-	-	-
세종특별자치시	17	-	157	5	229	11	3	-	-	-	-	-	-	-
경기도	1,306	66	6,337	260	4,169	399	36	2	14	1	-	-	-	-
강원특별자치도	12	5	182	70	3,503	174	19	2	901	184	-	-	1	1
충청북도	49	2	1,263	47	2,262	136	-	-	8	-	-	-	-	-
충청남도	-	-	251	9	2,746	280	78	6	4	-	-	-	-	-
전북특별자치도	-	-	-	-	1,036	60	55	5	34	4	-	-	-	-
전라남도	-	-	335	37	674	112	-	-	9	2	-	-	-	-
경상북도	324	11	832	30	3,568	281	-	-	355	166	-	-	7	1
경상남도	383	39	2,843	264	1,649	291	40	87	46	148	3	-	-	-
제주특별자치도	-	-	420	16	478	27	-	-	29	4	-	-	-	-

자료: 2022년 쓰레기 종량제 현황 통계자료(자원순환마루, www.recycling-info.or.kr)

[참고자료 3] 지방자치단체별 종량제 쓰레기 봉투 무상 지급 대상 사례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

시·도	시·군·구	조례명	무상 지급 대상 등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조례」	제31조(수수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감면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u>생계·의료급여 수급자</u>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서 정한 <u>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u> 3.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종량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에게 감면할 때에는 <u>생활폐기물용 규격봉투를 무료로 지급</u> 하되 <u>가구당 매월 120리터 범위</u> 에서 지급한다. 다만, <u>1인 가구에 대해서는 월 60리터 범위</u> 에서 지급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25조(수수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본배출량에 해당하는 <u>종량제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u> 있으며 기본배출량은 <u>주민 한 명에 월 30리터</u> 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u>생계·주거·의료 급여 수급자</u> 2.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경우 3. 통·반장 4. 「부산광역시 강서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대상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2조(수수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u>일반용 종량제봉투를 무상 제공</u> 하거나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u>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u>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u>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u>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일반용 종량제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에는 <u>1인당 매월 60리터를 초과할 수 없다</u> .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0조(수수료의 면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u>종량제봉투의 무료 제공</u> 등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시·도	시·군·구	조례명	무상 지급 대상 등
		한 조례」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u>보호 대상자</u>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된 <u>사회복지시설</u> 3.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財力)을 상실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일반용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u>1명당 매월 60리터를 초과하여 공급해서는 안 된다.</u> 제12조(종량제봉투의 무료제공)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u>종량제봉투를 무료로 제공</u> 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광역시 동구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생계급여) 및 제3호(의료급여)에 의한 <u>국민기초생활수급자</u>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u>한부모가족</u> 3. 「광주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u>국가보훈대상자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u> 4.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제공할 때에는 <u>가구당 매월 120리터의 범위 내에서</u> 지급한다. 다만, <u>1인 가구에 대해서는 월 60리터의 범위 내에서</u>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의 감면 사유에 두 개 이상 해당되는 세대에 대하여는 그 중 하나의 감면사유만 적용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28조(수수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원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감면대상자에 해당하는 세대에게 <u>1인당 월 20리터의 범위에서 일반용봉투를 무상으로</u>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동거인은 감면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u>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u> 2. 천재지변으로 재력을 상실한 사람 3. 통장·반장·새마을부녀회장 4. 환경관리원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u>지원대상자</u> 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u>장애인</u>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u>국가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u> 8.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각 호에 2개 이상 해당하는 세대는 하나의 감면사유만 적용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자 확인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도	시·군·구	조례명	무상 지급 대상 등
울산광역시	중구	「울산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8조(종량제봉투 대금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1명당 월60리터 기준량의 종량제봉투 대금 또는 봉투를 지원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2.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5조(수수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공급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와 의료급여 수급자 인 경우 2.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및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인 경우 3. 관내에 주소를 두고 월세납입의 주거형태로 거주하는 장애인인 경우 4. 부부 모두가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인 경우 5. 그 밖에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공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종량제봉투의 무료공급기준 및 관리) ①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무료공급기준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무료공급대상자”라 한다)가 공급받는 경우: 1명당 매월 60리터 (무료공급대상자가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경우에는 1명당 매월 20리터) 2. 세대원 중 무료공급대상자가 2명 이상 인 경우: 세대당 매월 120리터 ② ~ ④ (생략)
경기도	김포시	「김포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종량제봉투의 무상제공)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종량제봉투를 무상제공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단, 보장시설수급자는 제외 한다. 2.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종량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에게 종량제봉투를 무상제공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일괄 지급한다.

시·도	시·군·구	조례명	무상 지급 대상 등
			1. 일반용봉투: <u>가구당 월 100리터(단, 1인 가구는 월 50리터)</u> 2. 음식물봉투: 가구당 월 20리터(단, 1인 가구는 월 10리터) ③ 삭제 ④ 음식물종량제 기기 운영 등의 사유로 음식물 봉투가 불필요한 가구의 경우 같은 판매가 기준 이내의 범위에서 일반용 봉투로 대체 지급할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15조(수수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u>일반용 봉투의 무료제공</u> 등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u>수급자</u> 2. 제1호외의 자로서 군수가 정하는 자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일반용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u>가구당 매월 120리터 범위에서 지급</u>하여야 한다. 다만, <u>1인 가구 매월 60리터 범위</u>에서 지급할 수 있다.
충청북도	청주시	「청주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종량제봉투의 무료제공)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u>종량제봉투의 무료제공</u> 등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중 <u>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수급자</u> 및 제10호에 따른 <u>차상위계층</u>(시설보호자는 제외한다) 2. 이장·통장·반장, 새마을지도자, 의용소방대원, 소년소녀가장 3.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u>국가보훈대상자</u>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u>한부모 가정</u>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의 수수료를 감면할 때에는 일반용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지급하며, <u>가구당 월 120리터의 범위에서 지급</u>한다. 다만, <u>1인 가구는 월 60리터의 범위</u>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일반용 종량제봉투를 분기별로 무료 지급할 수 있다.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12조(수수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쓰레기봉투의 무료 제공 등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u>수급자</u> 2.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 예우와 지원대상 중 <u>국가보훈대상자</u>

시·도	시·군·구	조례명	무상 지급 대상 등
			3. 제1호와 제2호 이외의 자로서 군수가 필요하여 정하는 자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명당 1개월에 60L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8조(수수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쓰레기 봉투를 무료 제공 등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2. 제1호 외의 사람으로 시장이 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쓰레기 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명당 매월 60리터를 넘어 공급해서는 안 된다.
전라남도	나주시	「나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2조(수수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종량제봉투를 무료제공하거나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다만, 보장시설수급자는 제외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명예수당을 지급받는 보훈대상자) 3.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읍·면·동장은 종량제봉투를 무료제공하며, 가구당 매월 120리터, 1인 가구는 월 60리터의 범위 로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5조(종량제 봉투 판매수수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종량제 봉투의 무료제공 등 군수가 정하는 바에 방법에 따라 판매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4.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자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경감하여 공급할 때에는 봉투구입 가격에 1/10로 하고 원단위는 절상하며 1인당 매월 60L를 초과하여 공급해서는 아니된다.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	제17조(종량제봉투의 무료지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쓰레기용 봉투를 무료로 지급 할 수 있다. 이 경우 생활쓰레기용 봉투의 지급기준 및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도	시·군·구	조례명	무상 지급 대상 등
		례」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u>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u>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사람과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해당 하는 사람으로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생활쓰레기용 봉투의 무료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연탄사용가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탄재용봉투를 제작하여 분구수에 따라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다.
		「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봉투의 무료지급) ①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서 <u>무료로 지급하는 종량제봉투는 1인당 월40리터를 기준량으로 지급</u>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는 기준량 외 수용인원 5인당 월 종량제봉투 100리터와 공사장생활폐기물용 포대 각 1매를 추가지급할 수 있으며,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서 연탄사용가구에 무료로 지급하는 연탄재용봉투는 동절기(1월~3월, 11월~12월)에만 지급하되, 분구당 2일 20리터 1매를 기준량으로 하며, 연탄재용봉투에는 읍·면·동장이 지급대상자의 주소·성명을 기재하여 지급하고, 배출자가 연탄재 이외의 폐기물을 넣어 배출할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② 읍·면·동장은 봉투무료지급 대상자를 관련공부등으로 확인한 후 별지 제12호서식의 “생활쓰레기봉투 및 연탄재용봉투지급조서”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제33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u>수급자</u>(시설 입소자 제외) 2. 그 밖에 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은 종량제봉투 무상 공급 등으로 하되, 그 공급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수수료 감면자에 대한 종량제봉투 공급) ① 조례 제33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 감면자에게 종량제봉투를 무상 공급할 때에는 <u>1가구 당 매월 일반·재사용 겸용 가연성 종량제봉투를 20리터 4매와 연 1회 특수용(PP마대) 봉투 40리터 1매를 공급</u>할 수 있다. 다만, 수수료 감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기준량 내에서 종량제봉투의 종류를 달리하여 공급할 수 있다. ② (생 략)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발췌·정리